

부 산 고 등 법 원

창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창원)2019나12926 지상물매수청구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양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뉴탑, 담당변호사 이수하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문
제 1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 10. 11. 선고 2018가합10448 판결
변 론 종 결	2020. 5. 7.
판 결 선 고	2020. 5.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7,7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밀양시 C 임야 7,565㎡ 지상에 식재된 사과나무 1,114그루가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위적 청구 관련 주장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관련 추가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만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비용으로 신축한 건물 및 식재한 사과나무(이하 '이 사건 사과나무'라 한다)가 이 사건 임야에 부합됨으로써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그 이익인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임야에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과나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6,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그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사과나무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8. 8. 24. 피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사과나무를 심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사과나무에 그 소유자가 원고라는 취지의 명인방법을 마친 사실이 각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를 도와 이 사건 사과나무를 경작하는 과정에서 그 사과나무에 대한 권리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편의상 자기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② 위 전화통화 및 명인방법은 모두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 및 행위에 불과하고, 피고는 원고와의 위 전화통화 과정에서, 원고가 "저도 그러면 내 나무 권리 주장하면 되겠네요?"라고 하자 "아, 해라. 그 돈 네 생돈 아니잖아. 네가 요금 받고 그 사과밭에 나온 돈 가지고 한 거 아니가", "네가 생돈 한 거 같으면 권리가 있지"¹⁾, "누구 돈 가지고 심긴, 우리 여기 사과밭에 나온 걸로 심었지"²⁾라고 답하는 등 전체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사과나무를 식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추가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하면서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사과나무를 식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과나무는 원고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서 그 소유권 확인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1) 갑 제6호증 6 ~ 7쪽 참조.

2) 갑 제6호증 20쪽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리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256조 참조), 토지의 임차권, 사용대차권 등 사용권원에 기하여 그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 이에게 소유권이 있다 할 것이나³⁾,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 및 이 사건 사과나무를 원고의 비용으로 식재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또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남양우

 판사 조미화

 판사 김윤석

3) 수목이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식재되었다면 토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4529, 24536, 24543 판결 참조.